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0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백혜련 · 조계원 · 서영석
이원택 · 용혜인 · 전진숙
남인순 · 진선미 · 이수진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 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75조의2에 따라 해당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75조의2에 따라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상 등의 제한)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훈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 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 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⑤ ----- ----- ----- -----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제75조의2에 따라 해당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는 경 우 또는 다음-----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 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거나 <u>제5항</u>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 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 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⑥ ----- ----- ----- ----- -----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75조의2에 따라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 는 경우 또는 제5항-----

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

제7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
른 보상 등의 제한)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
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
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
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